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규직(채용형인턴) 신입직원 공개채용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민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취하는 신(信)통(通)한(汗)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1년 7 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접수 시 학력·성별·연령·출신지·사진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점수, 추천인 등 **직무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불필요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며, 이메일 주소 기재 시 학력이 유추될 수 있는 도메인 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형절차 관련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 7. 27.(화) ~ 2021. 8. 12.(목) 18:00:00
- **접수기간** : 2021. 7. 27.(화) ~ 2021. 8. 12.(목) 18:00:00 (공고기간과 동일)
- **접수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채용유형 및 인원

- **채용인원** : 71명
- **채용유형** : 채용형 인턴 (단, 일반직 법무·노무분야는 수습임용)
- **인턴기간** : 임용일로부터 ~ 2021.11.29.
 -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과정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결정 예정**
 - 수습임용(법무, 노무)는 3개월 수습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임용 예정**

3 모집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

※ 각 모집지역의 지역범위는 하단의 「4.모집지역별 거주지 제한」을 참조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계	71	< 공통 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정년(교사직 62세, 그 외 60세)에 미달하는 자 · 성별 및 연령(정년 이내) 제한 없음 · 공단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일반직 4급 (1명)	법무 1	·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모집지역(인원): 공단본부(1)
일반직 5급 (34명)	업무전반 (5급)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모집지역(인원): 전국(16), 전남권(2), 경북권(2), 경남권(2), 제주권(1)
	업무전반 (5급, 장애인)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모집지역(인원): 전국(8)
	노무 (5급)	·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모집지역(인원): 공단본부(1)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일반직 6급 (13명)	보조공학 (5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문분야* 학사학위 취득 자 -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문분야) 기계, 전기·전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학, 재활공학, 의용공학, 의료복지공학, 재활융합기술학, 재활학, 심리학에 관련된 분야 ※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민간 발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자격증만 인정 <p>모집지역(인원): 전국(2)</p>
	사무행정 (장애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p>모집지역(인원): 전국(3)</p>
	사무행정 (저소득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기산점: 선정일자) <p>모집지역(인원): 전국(1)</p>
	사무행정 (북한이탈주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p>모집지역(인원): 전국(1)</p>
	사무행정 (다문화가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해당자 <p>모집지역(인원): 전국(1)</p>
	사무행정 (고졸인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 등은 제외 <p>모집지역(인원): 전국(2), 충청권(1), 전북권(1), 경북권(1), 경남권(1)</p>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연구직 4급상당 (2명)	사무행정 (경력단절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임신·출산·육아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접수 마감일 기준 무직) <p>모집지역(인원): 전국(1)</p>	
	연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심리학, 통계학, 특수교육 등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원 상당직으로 재직 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p>모집지역(인원): 고공개발원(2)</p>	
	교사직 교사 (9명)	기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기계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취득하거나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p>모집지역(인원): 전국(2)</p>
		전기·전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전기·전자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취득하거나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p>모집지역(인원): 전국(2)</p>
		정보기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취득하거나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p>모집지역(인원): 전국(3), 전남권(1)</p>
		디자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디자인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취득하거나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p>모집지역(인원): 전남권(1)</p>
	직업 평가 5급 (8명)	직업평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 심리, 특수교육,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모집분야		인원	응시자격
			모집지역(인원): 전국(5), 강원권(1), 전남권(1), 경북권(1)
별정직 5급 (4명)	산업안전·보건	3	· 관련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모집지역(인원): 전국(3)
	수어통역	1	·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모집지역(인원): 전남권(1)

-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보유여부를 판단함
- **모집분야별, 모집지역별 중복지원 불가, 동일 모집기간의 공단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보유사항, 경력사항, 교육이수사항 등은 지원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해당하는 지원자가 **관련 우대가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의 보훈항목 또는 장애항목, 기타 적용대상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직업평가직 5급 지원서 작성 시에는, 2차전형(필기시험)의 직무수행능력평가 응시희망분야(과목)를 선택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음

4 모집지역별 거주지 제한

<모집지역별 응시자는 아래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모집지역이 '전국', '공단본부', '고용개발원'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모두 응시가능)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각 모집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2년 이상인 자
-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모집공고 시작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각 모집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공통 적용사항>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사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모집지역	지원자 거주지역 범위	임용 후 배치기관
전국	전국	전국 소재 소속기관
강원권	강원도	강원권 소재 소속기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 소재 소속기관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남권 소재 소속기관
전북권	전라북도	전북권 소재 소속기관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권 소재 소속기관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남권 소재 소속기관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권 소재 소속기관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전국	공단 본부, 고용개발원 (경기도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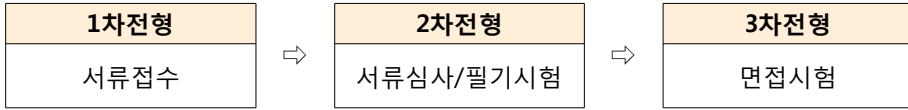
* 지원자는 본인이 응시한 모집지역에 배치되어 2028년12월31일까지 해당 모집지역 외에 소재한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발령이 제한되며, 다만 인사규정에 의거 기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전국순환근무 대상이 될 수 있음

- 응시자의 거주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거주사실 관련 항목에 거주내역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전국,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모집지역 응시자는 기재 불필요)**

5

전형절차

□ 전형절차 개요



□ 모집분야별 전형절차

모집분야		전형단계 및 합격배수			
		1 서류접수	2. 서류/필기(과목)		3 면접시험
일반직 4급	법무	전 모집분야 인터넷 서류접수	서류(5배수)		전 모집분야 1배수 선발
일반직 5급	노무		서류(5배수)		
	업무전반		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보조공학				
업무전반(장애인)					
일반직 6급	사무행정(장애인)		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사무행정(저소득층)				
	사무행정(북한이탈주민)				
	사무행정(다문화가정)				
	사무행정(고졸인재)				
	사무행정(경력단절여성)				
연구직 4급상당	연구	서류(5배수)			
교사직 교사	기계	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기·전자				
	정보기술				
	디자인				
직업평가직 5급	직업평가				
별정직 5급	산업안전·보건	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수어통역				

- 필기시험은 합격배수: 3배수 (단, 모집분야별 권역별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는 5배수)

□ 전형절차별 세부내용

전형단계		세부내용											
1차전형	서류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esingo.or.kr)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접수기간: '21.7.27. ~ '21.8.12. 18:00:00 											
2차전형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일반직 4급(법무) 일반직 5급(노무), 연구직 4급상당(연구) ■심사일정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사내용: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 <th>경력 및 경험기술서</th> <th>자기소개서</th> <th>가산점</th> </tr> </thead> <tbody> <tr> <td>100점</td> <td>40점</td> <td>60점</td> <td>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발배수: 모집분야 및 모집지역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균 60점 이하는 과락으로 처리됩니다.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심사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이 6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심사 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는 합격처리합니다.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서류(스캔자료)는 추후 합격자확인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없음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계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100점	40점	60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
	계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가산점									
100점	40점	60점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내용은 우대사항 참조)										
필기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일반직5급(업무전반,보조공학), 일반직6급, 교사직교사, 직업평가직5급, 별정직5급 ■시험일정: '21. 8. 28.(토) 예정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30문항) ■과목별 출제범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문항수</th> <th>시험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직업기초능력평가</td> <td>50문항</td> <td>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td> </tr> <tr> <td>직무수행능력평가</td> <td>30문항</td> <td>모집분야별로 상이 (하단의 모집분야별 출제범위 참조)</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발배수: 모집분야 및 모집지역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단, 모집분야별 권역별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선발) ■매 과목 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처리됩니다.(장애인 구분모집 과락제외) 				구분	문항수	시험범위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30문항	모집분야별로 상이 (하단의 모집분야별 출제범위 참조)
구분	문항수	시험범위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30문항	모집분야별로 상이 (하단의 모집분야별 출제범위 참조)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취득점수 총점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는 합격처리합니다.
 ■직업평가직5급의 경우 우대가점 및 과락기준을 적용한 과목별 점수를 표준점수화 하여 최종 취득점수를 산출합니다.
 ■직업평가직5급의 표준점수 산출법

표준점수 산출	
$(\text{표준점수}) = (Z\text{점수}) \times (\text{해당과목 표준편차}) + (\text{평균})$	
※ 평균 100, 표준편차 20	
※ Z점수 = (원점수 - 응시자 집단 평균) / (응시자 집단 표준편차)	
*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응시자 집단 범위'는 해당과목을 응시한 모든 직렬 범위를 뜻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의 '응시자 집단 범위'는 직업평가직5급 내 해당과목을 응시한 집단 범위를 뜻한다.	
* 해당과목 응시자가 1명인 경우에는 Z점수를 0으로 한다.	

■모집분야별 출제범위(직무수행능력평가)

모집직렬 및 직급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범위	
일반직5급 (업무전반, 보조공학, 장애인 구분모집)	영어(문법 및 독해)	
일반직6급	평가하지 않음(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시행)	
교사직 교사 (기계)	기계제도,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컴퓨터응용설계 및 가공(CAD/CAM),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CNC공작법 및 전공일반	
교사직 교사 (정보기술)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 및 전공일반	
교사직 교사 (전기-전자)	회로이론 및 전자기학, 전기기기,시퀀스제어,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교사직 교사 (디자인)	디자인 일반, 색채학, 컴퓨터그래픽스 일반, 편집디자인, 웹디자인(웹페이지 제작), 영상디자인	
직업평가직5급 (직업평가)	재활분야	재활상담, 직업평가, 재활행정, 재활정책 및 전공일반
	심리분야	직업심리, 심리검사, 임상심리, 심리상담 및 전공일반
	작업치료분야	작업치료 기초, 작업치료, 의료관계법규, 실기 및 전공일반
	특수교육분야	특수교육학
별정직5급	평가하지 않음(직업기초능력평가만 시행)	

		모집직렬 및 직급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범위		
3차전형	면접시험	■전형방법: 직무능력기반 면접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고객중심	20	전문성	20
		의사소통	15	실행력	15
		문제해결능력	15	책임의식	15
		■선발배수: 모집분야 및 모집지역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이거나, 위원 과반수에 의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이 "부족(D)"으로 평가된 경우 과락으로 처리됩니다.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이 60점을 초과하고, 위원 과반수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부족(D)"으로 평가된 사항이 없는 경우 적용합니다. ■심사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①장애인 ②취업지원대상자 ③2차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모집분야 및 모집지역별로 최종합격자 1배수 선발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의 최대 1배수범위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상기 전형절차 일정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취득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우대사항

구분	우대내용	유의사항
장애인	전형단계별 각 과목별 만점의 5%(중증장애인은 10%) 가산점 부여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함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각 과목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가산점 적용 비율을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입사지원 시 관련사항 입력
공단 청년인턴	'21.1.1. 이후 우리공단 청년인턴 2개월 이상 참여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접수마감일 기준 연속2개월 이상 근무기간 해당
공단 재직직원	우리공단 재직 중인 정규직 시간선택제 직원 및 특정업무직 직원 중 임용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접수마감일 기준 재직자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서의 장애항목 또는 보훈항목 관련사항, 해당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절차에서 해당 우대가점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우대항목 중복시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7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관련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일 :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발표 이후 3일간, 공휴일포함) ■ 제출방법: 공단 채용홈페이지의 합격자확인 페이지에 스캔자료 업로드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분야</th> <th>제출자료</th> </tr> </thead> <tbody> <tr> <td>응시자 공통사항</td> <td>모집지역(권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 ※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전국지역 응시자는 제출 불요</td> </tr> <tr> <td>일반직 4급(법무)</td> <td>변호사 자격</td> </tr> <tr> <td>일반직 5급(노무)</td> <td>공인노무사 자격증</td> </tr> <tr> <td>일반직 5급(업무전반)</td> <td>없음</td> </tr> <tr> <td>일반직 5급(보조공학)</td> <td><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자격요건 관련학과 증명서</td> </tr> </tbody> </table>	모집분야	제출자료	응시자 공통사항	모집지역(권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 ※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전국지역 응시자는 제출 불요	일반직 4급(법무)	변호사 자격	일반직 5급(노무)	공인노무사 자격증	일반직 5급(업무전반)	없음	일반직 5급(보조공학)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자격요건 관련학과 증명서
	모집분야	제출자료											
	응시자 공통사항	모집지역(권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 ※ 공단본부, 고용개발원, 전국지역 응시자는 제출 불요											
	일반직 4급(법무)	변호사 자격											
	일반직 5급(노무)	공인노무사 자격증											
	일반직 5급(업무전반)	없음											
일반직 5급(보조공학)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자격요건 관련학과 증명서												

모집분야	제출자료
	2. 보조공학사 자격증(민간발급 미인정)
일반직 5급(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일반직 6급 사무행정(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일반직 6급 사무행정(저소득층)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수급자증명서 2. 한부모가족증명서
일반직 6급 사무행정(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일반직 6급 사무행정(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국적취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직 6급 사무행정(고졸인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증명서
일반직 6급 사무행정(경력단절여성)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현재 자녀 없으나 임신중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출생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확인서 등 경력단절의 사유가 임신 및 출산, 육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구직 4급상당(연구)	1. 해당 전문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석사학위증, 경력증명서 또는 연구경력증명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원 상당직으로 재직한다 → 경력증명서(분야 반드시 기재)
교사직교사(기계)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2. 자격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교사직교사(전기·전자)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2. 자격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교사직교사(정보기술)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2. 자격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교사직교사(디자인)	<다음 자료 중 한 가지 이상>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2. 자격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직업평가직 5급(직업평가)	1.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별정직 5급(산업안전·보건)	1. 응시자격 관련분야 자격증
별정직 5급(수어통역)	1. 수화통역사 자격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마스킹처리 등) ■ 제출한 서류는 자격요건 확인에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자는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21.8.20.(금) 18시 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증빙서류 준비기간이 짧으므로 서류는 사전 준비 바랍니다.
-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 채용형 인턴

구분	근무시간	보수	
		직급	금액(월)
채용형 인턴기간	주 40시간, 일 8시간 (9시~18시)	연구직 4급상당	2,050천원
		일반직 5급, 직업평가직 5급, 별정직 5급	1,950천원
		일반직 6급	1,850천원
		교사직 교사	1,950천원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정규직 전환 후	기본 주 40시간, 일 8시간 (공단 내규에 따름)	공단 내규에 따름 (초임등급 확정 후 보수 책정)	

- 정규직 전환 후 공단 규정에 의해 초임등급을 확정하고 보수를 지급합니다.
(채용형 인턴은 최종 전체인원의 90% 이상 정규직 전환 예정)
- 근무예정지역: 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
- 담당업무: 공단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부여하는 업무

□ 수습임용 (3개월)

분야	근무시간	보수
일반직 4급(법무) 일반직 5급(노무)	주 40시간, 일 8시간 (기본 9시~18시)	공단 내규에 따름 (초임등급 확정 후 보수 책정)

* 수습기간 3개월을 운영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임용

** 수습기간 보수는 직군 초임등급을 적용하며, 법무·노무 직무수행에 따른 직무수당(30만원) 별도 지급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 등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하시어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절차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최종 제출한 후에는 기재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하실 수 없으니, 원서 기재 내용 등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예정일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학력, 전공, 학점, 외국어 점수, 추천인 등 직무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불필요한 선입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의바라며, 해당 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esingo.or.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 Q&A 게시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재개발부 채용문의 031-728-7123, 7255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 기간은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일자	비고
----	----	----

공 통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1. 7. 27. ~ 8 .12.	
---------------	----------------------	--

서류심사 대상분야

→ 일반직4급(법무), 일반직5급(노무), 연구직4급상당(연구)

서류심사	공단 내부일정에 따름	일정 비공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1. 8. 20.	'21. 8. 23.까지 증빙서류 제출
서류심사 대상분야 면접시험	'21. 8. 24. ~ 8. 26.	
서류심사 대상분야 면접합격자 발표	~'21. 8. 30.	9. 6일 임용예정

필기시험 대상분야

→ 일반직5급(업무전반, 보조공학), 일반직6급, 교사직교사, 직업평가직5급, 별정직5급

필기시험	'21. 8. 28.(토)	예정
필기시험 대상분야 합격자 발표	'21. 9. 3. ~ 9. 9. 중 1일	발표일로부터 3일간 증빙서류 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21. 9.14. ~ 9.16. 중	
필기시험 대상분야 면접합격자 발표	~'21. 9. 23.	

임 용

인턴임용	'21. 9. 30.	예정
------	-------------	----

- 상기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 및 코로나19 정부 방역정책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2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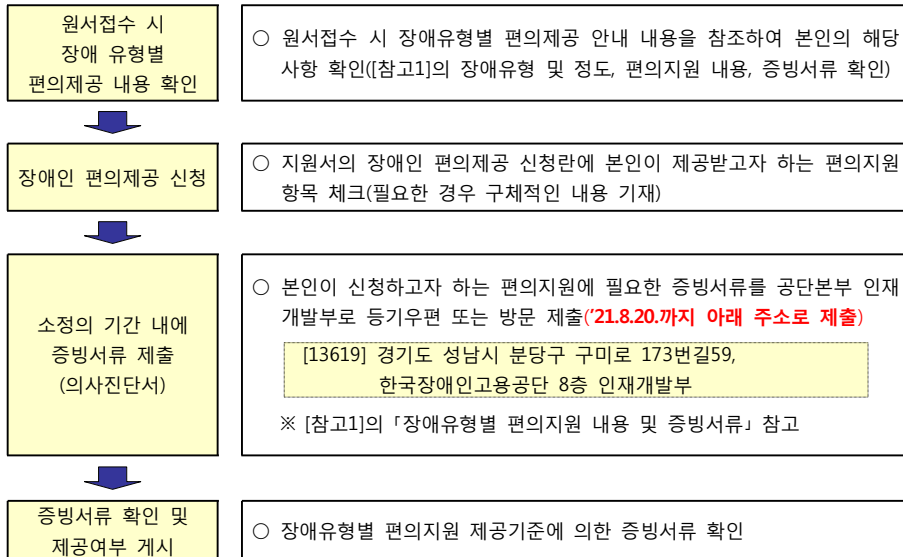
2021년 직원채용 필기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1년 직원채용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 단, 장애의 중·경증 여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기준을 적용함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보에 해당 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기재)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지원자는 입력란에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일정 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재개발부(031-728-7255, 7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1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장애정도)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장애	상지지체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3급	
	상지지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4~6급	
	하지지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1~3급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4~6급	
시각장애	시각 (장애정도가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의사 진단서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3급 1, 2호
	시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4,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시력 0.3이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 진단서	기존 5급 2호, 6급
		위 조건 이하의 시각 장애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수어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2~6급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참고 2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일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기 준 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1년 8월 12일
진단서 발급일	2019년 8월 11일 이후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중·경증 여부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